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안양지청 자장검사
전화 031-470-4302

보도자료

2022. 11. 4.(금)

제 목

김근식의 아동 성폭력 등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오늘(11. 4.) ① 김근식이 '06년 9월 경기 A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흥기로 죽인다고 위협하여 강제추행**하고,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하여 2회 **공무집행 방해**하고 재소자를 4회 **상습폭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 **구속 기소**하는 한편 ② 앞서 구속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고, DNA 감정, 피해자 진술 분석, 범죄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 등 관련 참고인 조사, 방대한 교도소 징계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 15년 10개월 동안 경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06년 아동 강제추행 범행을 DNA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게 규명하고 김근식의 자백을 확보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소하고,
 - 앞서 구속된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추가로 확인한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하였음
- 또한, 이번에 밝혀낸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하였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임

1

사건 개요

- 피고인 : 김근식(남, 54세 / 현재 안양교도소 수용 중)
- 공소사실 요지
 - '06. 9.경 경기 A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하여 강제추행 [구 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경기 A시 아동 강제추행)
 - 해남교도소에서 ㉠ '19. 12.경 피고인과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 甲을 폭행하고, ㉡ '21. 7.경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 乙을 폭행 [공무집행방해]
 - '17. 1.경부터 '19. 12.경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상습폭행]

2

수사 경과

- '20. 12. 인천계양서, 고소장 접수(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 '21. 7. 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
- '21. 8.~'22. 3. 검찰, 경찰에 3회에 걸쳐 보완수사 요구
- '22. 7. 경찰, 보완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최종 송치
 - ※ 김근식은 '20. 12. 고소 당시 해남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이후 포항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해남교도소, 안양교도소 등으로 계속 이감됨
- '22. 8.~'22. 11. 검찰, 김근식·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경찰 보관 중인 미제사건 전수조사, DNA 대조 감식, 범죄심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등 수사 진행
 - ※ '22. 10. 16.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 1차 구속 / '22. 11. 2. 다시 경기 A시 아동 강제추행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발부 받았고, 앞서 발부된 1차 구속영장에 대하여는 구속 취소함
- '22. 11. 4. 검찰, 구속 기소
 - ※ 1차 구속한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13세 미만 아동을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

3

수사 결과

●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면밀한 보완수사 중 추가 성범죄 발견

- 수사팀은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 피해 후 장기간 시간이 흐른 다음 고소가 이루어진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음
- 김근식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김근식의 특징적인 범행방법 확인,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나 추가 입증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송치사건 범행 시기 전후의 김근식 범행과 유사한 경찰 보관 중인 미제사건들에 대하여 전수조사 등 실시

△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미제사건의 경우, 경찰의 적극적 협조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과거 기록은 전산으로 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검찰은 7개 경찰서의 기록보관 창고에 보관 중인 종이로 된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였음

- 그 과정에서 경기 B경찰서에서 김근식의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을 강제추행한 미제사건을 발견하였고, 그 사건에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보존된 사실 확인
- 신속하게 경찰 미제기록에 보존된 신원미상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를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 감정한 결과 양자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16년 전 김근식이 저지른 성범죄(경기 A시 아동 강제추행)에 대한 자백을 확보했음
-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견한 경기 A시 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하여 2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1차 구속은 취소)

● 적극적 수사로 수형 중 범한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범죄를 추가 확인

- 김근식의 15년간 교도소 수용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재소자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도관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수용 기간 중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부분까지 확인하여 기소

● **검사의 객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1차 구속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 경찰에서 송치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김근식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의 범행장소 인근에서 발생하였고, 범행수법이 유사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등 형사소송법에 따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음
- 이후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위와 같이 7개 경찰서 창고에 보관 중인 기록들을 일일이 확인하던 중 C경찰서에 보관 중인 '05. 2. 종결된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미제기록을 발견함(당시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경찰에 별도 신고)

→ 추가 수사를 통해 위 미제종결 사건이 구속수사 중인 본건 송치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대검 진술분석,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해일시를 다시 명확하게 특정하고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함

※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로 판단되나, 피해일시에 대한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서 미제종결된 경찰 사건기록에 의하여 피해일시가 확인됨

4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김근식의 주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에서 송치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추가 증거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새롭게 발견한 경기 A시 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로 밝혀 구속 기소함으로써, 오로지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여 사건을 처리함
- 또한, 경기 A시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김근식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속칭 '전자발찌')을 함께 청구하였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임
- 검찰은 김근식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의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